

1. 개정이유

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안내하여야 할 내용과 안내표시 디자인의 표준화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장애인등편의법」이 개정(법률 제16257호, 2019. 1. 15. 일부개정, 2021. 1. 16. 시행)됨에 따라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종류별 안내기준과 함께 안내표시 디자인 기준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편의시설 안내표시 디자인기준 적용방안(안 제3조)

- 안내표시 디자인기준은 법제14조제2항의 “편의시설 상세표준도”를 따르는 것으로 함

나. 편의시설 안내표시 기준 마련(안 별표2)

- 이용 장애인 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안내표시기준의 설치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, 안내표시의 경우 문자의 서체는 고딕 계열을 우선할 수 있도록 제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
이 신설한다.

② 안내표시기준이 없는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표
시 디자인기준은 법 제14조제2항의 편의시설 상세표준도(詳細標準圖)
를 따른다.

별표2 2.안내표시기준 마목의 “설치기준”을 “마. 편의시설 종류별 시인
성 확보를 위해 바닥면의 색상과 재질, 설치 위치 및 방법”으로 한다.

별표2 2.안내표시기준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문자의 서체는 고딕 계열을 우선한다. 문자는 기울임, 기울임꼴,
가는 글꼴, 장식이 많은 글꼴이거나 다른 특이한 글꼴이 되지 않
도록 한다.

별표 2 제2호마목 중 “설치방법”을 “편의시설 종류별 시인성 확보를 위
해 바닥면의 색상과 재질, 설치 위치 및 방법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바목
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문자의 서체는 고딕 계열을 우선한다. 문자는 기울임, 기울임꼴, 가는 글꼴,

장식이 많은 글꼴이거나 다른 특이한 글꼴이 되지 않도록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안내표시기준)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3조(안내표시기준) ① (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안내표시기준이 없는 경우</u> <u>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</u> <u>안내표시 디자인기준은 법 제14</u> <u>조제2항의 편의시설 상세표준</u> <u>도(詳細標準圖)를 따른다.</u>